

## 대학등록금 수납대행 계약서(가상계좌용)

(주)하나은행 \_\_\_\_\_ 지점(이하 "은행"이라 한다.)과 \_\_\_\_\_ 대학교(이하 "대학" 이라 한다)는 "등록금 수납대행계약"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### 제 1 조(목적)

이 계약은 "대학"이 부과하는 입학금, 수업료, 학생회비 등 각종 납부금(이하 "등록금" 이라 한다)을 "은행"이 수납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### 제 2 조 (업무의 범위)

이 계약에 의해 처리되는 금융서비스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"대학"의 학생이 "은행"의 각종 전자금융채널 및 지점창구에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수납 업무
2. "대학"의 학생요청에 의하여 "대학"이 학생에게 부여한 "대학"의 등록금 입금전용계좌(이하 "가상계좌"라 한다.)에 입금된 자금을 "은행"이 제4조에서 지정한 모계좌(이하 모계좌라 한다)에 입금하는 업무와 거래 명세의 전송업무

### 제 3 조(업무처리 시간)

등록금 수납은 창구업무의 경우 "은행"의 영업시간 이내로 하며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"은행"의 동 업무 이용시간 범위내로 한다.

### 제 4 조(모계좌의 지정)

"대학" 은 "은행"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금 모계좌인 예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.

구분	예금과목	계좌번호	예금주
입금 모계좌			

### 제 5 조(가상계좌 입금업무 처리)

- ①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자원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한정한다.
- ② "은행"은 "대학"으로 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"대학"의 가상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"대학" 이 미리 정한 모계좌로 이체 하기로 한다.
- ③ "은행"은 "대학"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전산망에 의하여 "대학"에 전송 또는 조회 가능하게 지원한다.
- ④ "은행"이 수납한 자기앞 수표가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"대학"의 해당 모계좌에서 차감 하여 정리한다.

### 제 6 조 (입금처리의 예외)

“은행”이 입금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상계좌 또는 모계좌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.

#### **제 7 조(거래내용의 확인)**

- ① “은행”과 “대학”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상호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별도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 “은행”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와 확인사항 중 “은행”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결과와 전송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하며, 처리결과와 전송 내용과 실제 처리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대로 “대학”에게 별도 통지한다.

#### **제 8 조 (거래의 취소)**

“은행”이 전산처리한 내역 중 “은행”의 전산시스템 오류, 이중입금이나 오조작 등에 따른 오류에 한하여 “은행”은 “대학”에게 동 거래의 취소 및 정정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“대학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9 조(수수료)**

- ① 대학등록금 수납이체와 관련된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한다.  
다만, “대학”의 학생이 타행환망을 이용하여 등록금 입금전용계좌에 입금할 때에는 타행환 수수료는 “대학”의 학생이 부담한다.
-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타 부가서비스를 “은행”과 “대학”이 각각 추가 요청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 협의하여 적용하기로 한다.

#### **제 10 조 (효력 및 계약기간)**

- ①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
- ② 이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.

#### **제 11 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)**

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12 조 (전산운용)**

이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전산운용사항은 “은행”과 “대학”의 실무담당 부서장이 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# **제 13 조(기밀유지)**

- ① “은행”과 “대학”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기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.

#### **제 14 조 (책임)**

천재지변, 정전, 통신기기, 회선, 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 기타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처리불능 등의 경우에는 당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

